



제418 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조·구급대원 모욕금지 및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구조·구급대원 모욕금지 및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3
2.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한 사실확인조항 등 신설	7
3. 경찰과의 협력 조항 신설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구조·구급대원 모욕금지 및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안은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로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u>방해하여서는</u> 아니 된다.	② ----- ----- <u>방해하거나</u> <u>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u>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원을 모욕하여서는</u> -----. 제28조(벌칙) ① ----- ----- ----- <u>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한</u> ----- ----- -----.
<신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참고로 ‘구조 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함)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구급 활동'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함²⁾).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를 하여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³⁾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그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벌칙(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부과되는 법정형과 동일한데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4)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개정안의 경우 인명구조 활동 방해, 응급처치 활동 방해,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 그 밖에 필요한 활동 방해 등 구급·구조활동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방해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

구급·구조활동도 공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른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과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한 사실확인조항 등 신설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 등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보호 등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현행	개정안
	<u>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1. 응급환자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u> <u>2. 실종자의 수색</u> <u>3. 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u> <u>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u>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법 시행령⁵⁾은 소방청장등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유사한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입법례로서⁶⁾, 소방청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현장에서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는 화재 등 발생 시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요구조자의 위치나 응급환자의 병력(病歷) 사실 등 개인정보를 조회·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⁷⁾)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호에 적시된 사항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같은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목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이 있다고 보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이 법은 소방업무⁸⁾ 중 구조·구급업무⁹⁾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구조·구급활동 외의 소방활동은 규정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의 조회·확인에 대하여는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우리 위원회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40)이 계류되어 있는데,

구조·구급업무는 소방활동의 일부로 소방활동에 포함된다는 점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0) 제16조의8 본문과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 본문은 각각 사실조회요건을 “소방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및 “구조·구급업무에 필요하다 인정

8)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 상이하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두 법률에 사실조회조항을 모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3조의2제2항)은 현재 이 법 시행령 제32조의
410)11)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적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다만, 이를 상위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
임12).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11) 참고로, 동 규정은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119신고자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용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규정되었음. 해당 정보공유시스템은 2017년도에 구축된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국
회 결산심사 시 동 시스템은 119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주의)가 있었는바, 소방청은
그 후속조치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12) 그 외 체계자구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의2(사실의 확인 등) 제1항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소방청장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3. 경찰과의 협력 조항 신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

개정안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법은 소방업무¹⁴⁾ 중 구조·구급업무¹⁵⁾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구조·구급활동 외의 소방업무는 규정대상이 아님. 이에 개정안과 같이 모든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일반적인 행정협조 관련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4)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